

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5.07.31

2.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[외화송금, 외국통화매입, 외화수표 등의 매입(추심)거래]</p> <p>(생 략) 제1조 ~ 제7조 (생 략)</p> <p>제8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.</u> 다만,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[외화송금, 외국통화매입, 외화수표 등의 매입(추심)거래]</p> <p>(좌 등) 제1조 ~ 제7조 (좌 등)</p> <p>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, <u>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u> 다만,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공정위 약관 시정요청 사항</p>